

원종 휴먼빌 클라츠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4.18.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 정보 (분양문의) 1661-774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 여부
민영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10년		3년	없음	적용	공공택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5.04.18.(금)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0.(토)~ 2025.05.16.(금)	2025.05.20.(화)~ 2025.05.22.(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 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3.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 신청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 접수 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 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 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 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 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

- 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원종휴먼빌클래스.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 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 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 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경우(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으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 없이 청약 신청 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 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
(단, 작은 주택 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 구간의 청약 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 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
 - **중전 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 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 가능**
 - * **중전 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멸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 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4.18.(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부천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04.28.(월)	2025.04.29.(화)	2025.04.30.(수)	2025.05.09.(금)	2025.05.10.(토)~ 2025.05.16.(금)	2025.05.20.(화)~ 2025.05.22.(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 접수) 사업주체 건본주택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 접수) 청약통장 가입 은행	■ (PC·모바일) 청약홈	■ 원종 휴먼빌 클라츠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건본주택 현장 접수(10:00~14:00, 은행 창구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 취소는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 불가
-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 기간(당첨자발표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은 불가함)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 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 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
경기도 부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 시기 등 거래 대상 주택의 이용 계획의 신고를 의무화(**거래가격 6억원 이상**)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인지세 납부 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공동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 부담분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또는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야 합니다.]
 ※ 세액은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입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 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 과세 대상이므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 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 또는 전매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단,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 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 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 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5.05.09.)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단, 전매제한기간 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까지)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부천시 주택국 공동주택과 - 14104호(2025.04.1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B1블럭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15층 4개 동 총 255세대
[특별공급 163세대(기관추천 25세대, 다자녀가구 25세대, 신혼부부 58세대, 노부모부양 7세대, 생애최초 48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094	01	046.0620	46	46.0620	25.8650	71.9270	46.9066	118.8336	34.6021	54	5	6	12	1	10	34	20	4
	02	047.0468	47	47.0468	25.6884	72.7352	47.9095	120.6447	35.3419	40	4	4	9	1	7	25	15	3
	03	059.8001A	59A	59.8001	26.9478	86.7479	60.8966	147.6445	44.9223	51	5	4	12	2	10	33	18	4
	04	059.7560B	59B	59.7560	26.4544	86.2104	60.8518	147.0622	44.8892	68	7	7	15	2	13	44	24	5
	05	059.6824C	59C	59.6824	26.6311	86.3135	60.7767	147.0902	44.8339	42	4	4	10	1	8	27	15	3
합 계										255	25	25	58	7	48	163	92	19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 시) 주택형	046.0620	047.0468	059.8001A	059.7560B	059.6824C
약식표기	46	47	59A	59B	59C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버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택형별 단지 위치 주변 여건 등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는 일반부양 총공급 세대에 포함된 세대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 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인허가 변경 또는 필지 합병 및 분할 확정측량으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 형의 경우라도 획지별 주택 공급면적이 차이가 있으며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5 -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으로 방문 및 연락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 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 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46	47	59A	59B	59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1	1	1	1	5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1	1	-	3
	장애인	경기도	1	1	1	1	5
		서울특별시	-	-	1	-	1
		인천광역시	-	-	1	-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50%)	3	2	2	4	2	13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거주자(50%)	3	2	2	3	2	12
	신혼부부 특별공급	12	9	12	15	10	5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1	2	2	1	7
생애최초 특별공급		10	7	10	13	8	48
합 계		34	25	33	44	27	16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원, 세대)

타입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 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합계	1차	2차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지정일
								계약 시	계약 후 1개월 이내	2025.09.23.	2025.12.23.	2026.04.23.	2026.07.23.	2026.11.23.	2027.02.23.	
46	54	101동 1,2호	3층	2	225,608,401	221,491,599	447,100,000	15,000,000	29,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44,710,000	134,130,000
			4층	2	225,608,401	228,591,599	454,200,000	15,000,000	30,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45,420,000	136,260,000
			5층	2	225,608,401	235,791,599	461,400,000	15,000,000	31,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46,140,000	138,420,000
			6층 이상	20	225,608,401	250,491,599	476,100,000	15,000,000	32,610,000	47,610,000	47,610,000	47,610,000	47,610,000	47,610,000	47,610,000	142,830,000
		102동 1,2호	1층	1	225,608,401	213,891,599	439,500,000	15,000,000	28,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43,950,000	131,850,000
			2층	1	225,608,401	218,691,599	444,300,000	15,000,000	29,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3층	2	225,608,401	225,991,599	451,600,000	15,000,000	30,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45,160,000	135,480,000
			4층	2	225,608,401	233,191,599	458,800,000	15,000,000	30,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45,880,000	137,640,000
			5층	2	225,608,401	240,391,599	466,000,000	15,000,000	31,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46,600,000	139,800,000
			6층 이상	20	225,608,401	255,291,599	480,900,000	15,000,000	33,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48,090,000	144,270,000
47	40	103동 1,2호	1층	1	230,431,881	214,068,119	444,500,000	15,000,000	29,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44,450,000	133,350,000
			2층	1	230,431,881	218,868,119	449,300,000	15,000,000	29,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44,930,000	134,790,000
			3층	2	230,431,881	226,168,119	456,600,000	15,000,000	30,660,000	45,660,000	45,660,000	45,660,000	45,660,000	45,660,000	45,660,000	136,980,000
			4층	2	230,431,881	233,468,119	463,900,000	15,000,000	31,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46,390,000	139,170,000
			5층	2	230,431,881	240,768,119	471,200,000	15,000,000	32,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47,120,000	141,360,000
			6층 이상	18	230,431,881	255,868,119	486,300,000	15,000,000	33,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48,630,000	145,890,000
		104동 1호	1층	1	230,431,881	209,668,119	440,100,000	15,000,000	29,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132,030,000
			2층	1	230,431,881	214,468,119	444,900,000	15,000,000	29,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44,490,000	133,470,000
			3층	1	230,431,881	221,668,119	452,100,000	15,000,000	30,210,000	45,210,000	45,210,000	45,210,000	45,210,000	45,210,000	45,210,000	135,630,000
			4층	1	230,431,881	228,868,119	459,300,000	15,000,000	30,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45,930,000	137,790,000
			5층	1	230,431,881	236,168,119	466,600,000	15,000,000	31,660,000	46,660,000	46,660,000	46,660,000	46,660,000	46,660,000	46,660,000	139,980,000
			6층 이상	9	230,431,881	251,068,119	481,500,000	15,000,000	33,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48,150,000	144,450,000

59A	51	101동 5호, 102동 5호, 103동 5호, 104동 4호	3층	4	292,896,638	262,903,362	555,800,000	20,000,000	3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55,580,000	166,740,000
			4층	4	292,896,638	271,703,362	564,600,000	20,000,000	3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56,460,000	169,380,000
			5층	4	292,896,638	280,603,362	573,500,000	20,000,000	3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57,350,000	172,050,000
			6층 이상	39	292,896,638	299,003,362	591,900,000	20,000,000	3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59,190,000	177,570,000
59B	68	101동 3호, 104동 2,3호	1층	1	292,680,639	239,519,361	532,200,000	20,000,000	3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53,220,000	159,660,000
			2층	1	292,680,639	245,419,361	538,100,000	20,000,000	3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53,810,000	161,430,000
			3층	3	292,680,639	254,119,361	546,800,000	20,000,000	3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54,680,000	164,040,000
			4층	3	292,680,639	262,819,361	555,500,000	20,000,000	3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55,550,000	166,650,000
			5층	3	292,680,639	271,619,361	564,300,000	20,000,000	3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56,430,000	169,290,000
			6층 이상	28	292,680,639	289,619,361	582,300,000	20,000,000	3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58,230,000	174,690,000
		102동 3호, 103동 3호	1층	1	292,680,639	244,919,361	537,600,000	20,000,000	3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53,760,000	161,280,000
			2층	2	292,680,639	250,719,361	543,400,000	20,000,000	3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54,340,000	163,020,000
			3층	2	292,680,639	259,619,361	552,300,000	20,000,000	3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55,230,000	165,690,000
			4층	2	292,680,639	268,419,361	561,100,000	20,000,000	36,110,000	56,110,000	56,110,000	56,110,000	56,110,000	56,110,000	56,110,000	168,330,000
			5층	2	292,680,639	277,219,361	569,900,000	20,000,000	3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56,990,000	170,970,000
			6층 이상	20	292,680,639	295,419,361	588,100,000	20,000,000	3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58,810,000	176,430,000
59C	42	101동 4호	3층	1	292,320,151	255,179,849	547,500,000	20,000,000	3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54,750,000	164,250,000
			4층	1	292,320,151	263,879,849	556,200,000	20,000,000	3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55,620,000	166,860,000
			5층	1	292,320,151	272,579,849	564,900,000	20,000,000	3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56,490,000	169,470,000
			6층 이상	10	292,320,151	290,679,849	583,000,000	20,000,000	3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102동 4호, 103동 4호	1층	1	292,320,151	245,879,849	538,200,000	20,000,000	33,820,000	53,820,000	53,820,000	53,820,000	53,820,000	53,820,000	53,820,000	161,460,000
			2층	2	292,320,151	251,779,849	544,100,000	20,000,000	3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54,410,000	163,230,000
			3층	2	292,320,151	260,579,849	552,900,000	20,000,000	3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55,290,000	165,870,000
			4층	2	292,320,151	269,479,849	561,800,000	20,000,000	36,180,000	56,180,000	56,180,000	56,180,000	56,180,000	56,180,000	56,180,000	168,540,000
			5층	2	292,320,151	278,279,849	570,600,000	20,000,000	3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57,060,000	171,180,000
			6층 이상	20	292,320,151	296,579,849	588,900,000	20,000,000	3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58,890,000	176,670,000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 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및 분양사무소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므로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부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된 분양가 상한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펌프실, 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아파트 대지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인허가 변경 필지의 합병 및 분할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 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을 기준으로 합니다. (필로티,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는 예정 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수령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15일 이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 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총분양대금의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 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 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 축소·대출 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휴일 및 법정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 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을 하여야 하며, 납부 일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불가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 접수는 동별·층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받고, 동·호수를 추가하여 추첨 결과에 따라 각 동별·층별·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 조건은 판매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 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24.0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0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 *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	-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 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합니다.
--

구분	내용				
공급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구분		처리 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 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 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 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 건은 무효 처리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경우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 신청자의 당첨 건이 유효	
			모두 부적격 처리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 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합니다.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복지와 ■ 장애인 : 경기도청 보건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보건복지국 장애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도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 대상자 및 예비 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 자녀 포함)이 있는 분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 수 → ④청약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지역 거주자(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50% - 주택형별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지역인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경쟁이 있는 경우 부천시 거주자 우선)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지역 거주 신청자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배점				
	배점 항목	총 배점	배점 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 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 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 청약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 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 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23% 범위 : 5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 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 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 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 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 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 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건축물 종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경기도 부천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개월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9% 범위 : 4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 -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 ※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 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1인 가구는 주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 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 구분		
	단계	소득 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자산 보유 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5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1순위 신청 가능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2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2순위로 청약 신청 가능하며,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table><tr><th>구 분</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tr><tr><td>전용면적 85㎡ 이하</td><td>300만원</td><td>250만원</td><td>2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02㎡ 이하</td><td>600만원</td><td>400만원</td><td>300만원</td></tr><tr><td>전용면적 135㎡ 이하</td><td>1,000만원</td><td>700만원</td><td>400만원</td></tr><tr><td>모든 면적</td><td>1,500만원</td><td>1,000만원</td><td>500만원</td></tr></table>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 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 당첨 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 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 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녀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 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table> <tr> <th>단계</th><th>비율</th><th>내용</th></tr> <tr> <td>1단계</td><td>추첨제 물량의 75%</td><td>무주택세대구성원</td></tr> <tr> <td>2단계</td><td>1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td><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tr> <tr> <td>3단계</td><td>2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td><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tr> </table>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 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비고	■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6

청약 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완료

- 청약 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 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 신청 취소 완료

- 청약 신청 취소 가능 시간 :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 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 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 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 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 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 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 접수 시 필요 서류

필요 서류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 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 신청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 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등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5.09.(금) ~ 2025.05.18.(일)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05.09.(금)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 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5.05.09.(금)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또는 카카오회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5.05.20.(화)~2025.05.22.(목) 10:00 ~ 16:00 • 장소 - 원종 휴먼빌 클라츠 건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및 장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을 위해 아래 제출기한까지 공급(당첨)유형별 자격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장소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2025.05.10.(토)~2025.05.16.(금) 10:00 ~ 16:00	• 원종 휴먼빌 클라츠 견본주택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 구비 서류 등 지참 방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서류 반드시 지참
예비입주자	예비입주자 서류접수 대상은 별도 통보 예정	추후 개별 통보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정당 당첨자는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서류 제출 일정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단, 정당 당첨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자격 검증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절차로 계약 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예비입주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일정, 공급(추첨) 방법 등을 홈페이지(<http://www.원종휴먼빌클라츠.com>)에서 공지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 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 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 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 확인 서류 미제출'로 계약체결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격 검증 서류 제출 시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10년 동안 보관한 뒤에 해당 기간이 경과하고 나면 폐기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비 서류 (당첨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기관추천 특별공급 포함)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인감증명서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만 가능, 대리 발급분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 로 발급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 로 설정하여 발급
		○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약서		• 기존주택 처분 조건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양식 : 견본주택 비치)

		○	복무확인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기타지역(수도권)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 배우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공급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등재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	전세 피해자 확인 서류	본인 또는 세대원	· 전세 피해자 낙찰주택 소유 기간(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그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낙찰받아 소유한 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받기 위한 경우 ※ 단, 낙찰주택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공시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① 해당 임차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낙찰 증빙 서류 : 매각허가결정서 사본 또는 매각결정통지서 사본 ③ 해당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원본 ④ 채권자의 확인 서류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의 사본 또는 배분계산서 등의 사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3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자격요건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 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 등본 상 등재되어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1년 이상의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직계비속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 자녀 기준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 소유 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생애최초 특별공급	○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혼인신고일, 자녀 수, 월평균 소득 확인(견본주택 비치)
	○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 당첨자 본인의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서류(청약 신청자 본인)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소득산정 시 공급신청자의 가구원 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공급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하였음을 확인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진단서 (출산의 경우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한 태아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 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담당 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의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한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양식 : 견본주택 비치)
		○	사실증명(신고 사실 없음)		· 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 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물		· 소유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시가격 열람 출력물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참조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세)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를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3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현재(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당첨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거나,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관계 확인 및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 확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비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상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만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현재(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 여부 증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주택 : 관할 지자체에서 발급한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한 공문 - 소형·저가 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가격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 사실 소명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 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 자격확인 서류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분만 가능, 대리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
		○	위임장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양식 : 견본주택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 이후 상세 발급분에 한하며, 주택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 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표기 및 “주소 변동 이력” 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해당 직장에서 발급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직인 날인 필요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표1]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명서류

해당 자격		소득입증 제출 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 기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해당 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원본(직인 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 또는 해당 직장 연봉/근로계약서(직인 날인)	①② 해당 직장

자 영 업 자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전년도 전직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 직장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가입내역 확인서 원본 ※ 기준 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국민연금 미가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과세금액 및 사업 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③ 세무서
자 영 업 자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원본(직인 날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⑤ 재직증명서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⑤ 해당 직장 ③ 세무서 ④ 등기소
	프리랜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 날인) ②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세무서/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원본 ※공급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행정복지센터
일용직 근로자 등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원본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세무서/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별도 서식) ② 사실증명서(신고 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① 건보주택 비치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 및 소득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 기간 및 휴직 유형(예시: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제증명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예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제출한 서류에 대해 위·변조 검증을 실시하며, 제출서류의 위·변조 확인 시 수사 기관에 고발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모든 입증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서류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표2]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서류(청약 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 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제출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5개년도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필요)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 날인) ② 소득금액증명 원본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③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제출	① 해당 직장 ② 세무서 ③ 해당 직장/세무서
---------------------------	--	--	---------------------------------

※ 과거 5개년도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 실적을 의미합니다.

※ 상기 모든 입증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이라도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 휴직했던 분은 휴직 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사본 및 FAX 수신 문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종합소득세 납부자 중 납부내역증명서 발급 불가자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 [표3]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 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구분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소유 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 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etax.seoul.go.kr), 위택스 (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대장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행정복지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음 (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 소유 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 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행정복지센터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표4] **해외 체류(단신 부임) 관련 입증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유의 사항 등
	필수	추가 해당자			
해외근무자 (단신 부임)	○		해외 근무 증빙서류	본인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 내역 등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필수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 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서류 증빙이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 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출생연도부터 현재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 전체 포함 ”으로 발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청약 신청자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 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더라도 해외근무자 우선공급 예외 규정 적용을 위한 세대원의 범위에 포함)
- ※ 청약 신청자가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상기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하며, 단독세대원으로 되어 있거나, 동거인의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적용 불가.
- ※ 청약 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 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 국가 체류 기간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에는 단신 부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당 국가 출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입국한 경우 해당 국가에 계속 체류한 것으로 간주)
- ※ 청약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가 모두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면 신청자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해외 체류 예외 규정 적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 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 일자에 해당 계좌로 납입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 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8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에 명시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고,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계약체결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제출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무통장 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		본인	※ 부동산 거래신고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전자수입인지	○		-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 발급분만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분은 절대 불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 여권 불가) ※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온라인(모바일) 신분증은 인정되지 않으며,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 상기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4.18.)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공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 재외동포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부)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공급 계약 시 제출서류 명확화(제2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일정 기간 거주 증명)가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2009.04.01. 재당첨 제한 완화 조치에 의거)
-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현장 수납 불가)
- 당첨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 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 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 가점 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주택 소유 현황 등 기재 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서류는 접수일부터 5년 동안 보관하며,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보관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시 사업주체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일정 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 관련 예금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 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 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 등은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건축허가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설계 및 시공 관련 개선, 구조개선 법령 및 지자체 지침 준수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래 당사자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 일부 세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거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계약 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등기 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 행위, 통장 매매, 위장 전입, 분양대금 미납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등_「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4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본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 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는 건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 (건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10% 납입 시 중도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으나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이자 대납 기간은 대출 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최초입주개시일 전일까지입니다.
 - 분양계약자 개인(대출 미신청 및 대출 부적격 등)의 사유로 사업주체에서 알선된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에 서류 미제출 시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 불가할 경우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당사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약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장 상황에 따라 대출 은행을 선정하지 못할 경우 계약자는 본인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에게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기관의 내부규정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각 납부 회차별로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약정일, 약정금액 등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모든 경비는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별도로 계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계약자가 분양대금 미납 시 분양계약서상 명시된 연체요율에 의거하여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계약자는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금융기관의 특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 결격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대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분양대금 납부 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에 대한 의무가 없으며 "개인 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지연 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따른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추후 사업주체 또는 해당 은행의 사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 은행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협의내용에 따라 만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이후 만기 연장이 불가능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만기 연장의 의무가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만료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체와 금융기관 간 사전 협의한 대출 기간이 만료되어 신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일정 시점 이후 또는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 승계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보증에 의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알선된 경우 계약자가 대출 금융기관에 대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자의 여신거래 약정 위반, 기타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 금융기관이 사업주체에게 보증 채무의 이행 또는 대위변제를 요구하여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한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였더라도 계약금 미납, 보증서 발급 불가, 대출 한도 부족, 신용상의 문제 등 대출 결격사유가 발생(또는 발견될)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는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

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건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당사와 분양상당 시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 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당(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법인은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 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우선 납부한 중도금 대출이자 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9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 마이너스 옵션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 시	2026.07.23.	입주지정일
46	5,000,000	500,000	500,000	4,000,000
47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59A	6,200,000	620,000	620,000	4,960,000
59B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59C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393301-04-113632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는 상기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발코니 확장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발코니 확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8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입금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건본주택 제출 [건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급금액과 별도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 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은 건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의 마감자재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건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환기구(디퓨저) 위치, 시스템에어컨 및 에어컨 매립 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합니다.(겨울철 실내 습도가 높고 환기가 부족한 경우 결로 및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우며, 각 세대에 설치된 환기시설을 주기적으로 적극 활용하여 환기 시 결로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 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으며 에어컨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의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각 실, 실외기실 등 외부 창호는 계약 미포함 사항이며 향후 별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또한,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의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가 입주 후 발코니 확장을 개별적으로 계약 체결하여 시공할 경우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를 고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 사양 및 크기, 개폐 방식, 개폐 방향 등은 주거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에어컨 냉매 배관(매립)은 침실(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에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입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하여 발생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사업주체에게 책임이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및 설비배관은 노출 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그릴 창호의 규격, 크기, 형태, 턱 높이, 연결되는 노출 배관의 위치 등은 주거 만족도 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층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포함되는 지금 품목은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창호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창호는 지역별 단열성능 확보제품으로 설치되며 창호 및 유리(원자재 브랜드, 제조사)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별도 고지는 하지 않습니다.
- 본 발코니 확장 계약은 가구, 전자제품 계약과 무관하며, 추후 건본주택에 전σι품목으로 설치되어 있던 제품의 미설치를 이유로 사업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가 시공하는 발코니 확장은 관련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발코니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범위 및 확장에 따른 발코니 창호 설치기준은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실시공 시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불합리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기준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분	설치대수	설치 위치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실내기	실외기		계약 시	2026.07.23.	입주 시	
46	선택1	2대	거실, 침실1	삼성	거실: AJ052BN1PBC1 침실1: AJ020BN1PBC2	AJ025MXHNBC1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선택2	3대	거실, 침실1, 침실2		거실: AJ052BN1PBC1 침실1: AJ020BN1PBC2 침실2: AJ016BN1PBC2	AJ030MXHNBC1	4,800,000	480,000	480,000	3,840,000	
47 59A 59B 59C	선택1	2대	거실, 침실1		거실: AJ052BN1PBC1 침실1: AJ020BN1PBC2	AJ025MXHNBC1	3,800,000	380,000	380,000	3,040,000	
	선택2	4대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AJ052BN1PBC1 침실1: AJ020BN1PBC2 침실2,3: AJ016BN1PBC2	AJ030MXHNBC1	5,800,000	580,000	580,000	4,640,000	

■ 가전제품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구분	제조사	모델명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6.07.23.	입주 시	
전 타입	비스포크 냉장고(3도어)	선택1	삼성	냉장: RR40C7995AP 냉동: RZ34C7965AP 김치: RQ34C7945AP	6,500,000	650,000	650,000	5,200,000	냉장고장 (상부플랩장+키큰장 포함)
전 타입	전기오븐(블랙)	선택1		NQ36A6555CK	360,000	36,000	36,000	288,000	
전 타입	비스포크 전기오븐(화이트)	선택1		NQ36A6588CW	400,000	40,000	40,000	320,000	
전 타입	비스포크 3구 인덕션(화이트)	선택1		NZ63CB6506XW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전 타입	식기세척기	선택1		DW80F71Y1SEW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옵션 구성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비고
					계약 시	2026.07.23.	입주 시	
공통	현관 3연동 중문	실속형	일반형 3연동 중문 설치	1,700,000	170,000	170,000	1,360,000	
		프리미엄형	자동형 3연동 중문 설치	2,300,000	230,000	230,000	1,840,000	
	거실 우물천장+조명	실속형	우물천장 시공	250,000	25,000	25,000	200,000	
		프리미엄형	우물천장 시공 조명특화(2면 직·간접등, 아트월 스팟등(3개), 냉장고장 스팟등(1개), 주방 라인 매입등)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불박이장	46, 47 : 침실2에 설치 59A, 59B, 59C : 침실3에 설치		1,360,000	136,000	136,000	1,088,000	

46	욕실 특화	고급 벽·바닥 타일+엔지니어드 스톤 선반+측면 타일 욕조+비데 일체형 위생기 +고급 도기+고급 수전+조명형 욕실장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아일랜드 식탁	MMA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1,600,000	160,000	160,000	1,280,000	
	주방 특화	실속형	일반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프리미엄형1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5,500,000	550,000	550,000	4,400,000	
		프리미엄형2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키큰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주방 팬트리	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픽스판넬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침실1/주방 수납 특화	실속형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실속형(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프리미엄형	주방 팬트리 +드레스룸 프리미엄형 (양개형 슬라이딩 도어, 벽부형 이동식 조명형 시스템가구)	5,900,000	590,000	590,000	4,720,000	
	거실 특화	실속형	아트월 타일 시공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프리미엄형	히든 도어 + 보드 판넬	3,600,000	360,000	360,000	2,880,000	
	프리미엄 광폭 강마루	세대 바닥 전체 시공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47	욕실 특화	고급 벽·타일+엔지니어드 스톤 선반+측면 타일 욕조+비데 일체형 위생기 +고급 도기+고급 수전+조명형 욕실장		2,900,000	290,000	290,000	2,320,000	
	주방 특화	실속형	일반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프리미엄형1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3,400,000	340,000	340,000	2,720,000	
		프리미엄형2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키큰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	8,800,000	880,000	880,000	7,040,000	
	침실3 드레스룸	실속형	화장대+폴대형 시스템가구	1,450,000	145,000	145,000	1,160,000	
		프리미엄형	고급 화장대+서랍장+벽부형 이동식 조명형 시스템가구	3,500,000	350,000	350,000	2,800,000	
	거실 특화	실속형	아트월 타일 시공	850,000	85,000	85,000	680,000	
		프리미엄형	히든 도어+보드 판넬	4,600,000	460,000	460,000	3,680,000	
	프리미엄 광폭 강마루	세대 바닥 전체 시공		1,000,000	100,000	100,000	800,000	

59A	욕실 특화	공용욕실, 부부욕실 고급화(고급 벽·바닥 타일+엔지니어드 스톤 선반+측면 타일 욕조+비데 일체형 위생기+고급 도기+고급 수전+조명형 욕실장)		6,360,000	636,000	636,000	5,088,000	
	아일랜드 식탁	MMA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1,670,000	167,000	167,000	1,336,000	
	주방 특화	실속형	일반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프리미엄형1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5,600,000	560,000	560,000	4,480,000	
		프리미엄형2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키큰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	11,000,000	1,100,000	1,100,000	8,800,000	
	현관-복도 팬트리	통합형	2면 신발장 +복도 팬트리(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픽스판넬)	2,600,000	260,000	260,000	2,080,000	
		분리형	1면 신발장 +현관 창고(가구 도어+시스템가구) +주방 팬트리(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픽스판넬)	2,500,000	250,000	250,000	2,000,000	
	드레스룸	실속형	화장대+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	2,800,000	280,000	280,000	2,240,000	
		프리미엄형	3연동 슬라이딩도어+벽부형 이동식 조명형 시스템가구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거실 특화	실속형	아트월 타일 시공	900,000	90,000	90,000	720,000	
		프리미엄형	히든 도어+보드 판넬	4,650,000	465,000	465,000	3,720,000	
	프리미엄 광폭 강마루	세대 바닥 전체 시공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59B 59C	욕실 특화	공용욕실, 부부욕실 고급화(고급 벽·바닥 타일+엔지니어드 스톤 선반+측면 타일 욕조 +비데 일체형 위생기+고급 도기+고급 수전+조명형 욕실장)		6,360,000	636,000	636,000	5,088,000	
	아일랜드 식탁	MMA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1,670,000	167,000	167,000	1,336,000	
	주방 특화	실속형	일반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1,060,000	106,000	106,000	848,000	
		프리미엄형1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5,400,000	540,000	540,000	4,320,000	
		프리미엄형 2	엔지니어드 스톤(벽체/상판) 아일랜드 식탁(엔지니어드 스톤 상판, 조명+매립형 콘센트 포함) 냉장고장(상부플랩장, 키큰장 포함) 고급 니켈 수전 비스포크 냉장고 3도어	10,850,000	1,085,000	1,085,000	8,680,000	

	현관-복도 팬트리	통합형	2면 신발장 +복도 팬트리(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픽스판넬)	1,900,000	190,000	190,000	1,520,000	
		분리형	1면 신발장 +현관 창고(가구 도어+시스템가구) +복도 팬트리(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픽스판넬)	1,550,000	155,000	155,000	1,240,000	
	드레스룸	실속형	화장대+가구 도어+폴대형 시스템가구	2,200,000	220,000	220,000	1,760,000	
		프리미엄형	3연동 슬라이딩도어+벽부형 이동식 조명형 시스템가구	4,000,000	400,000	400,000	3,200,000	
	거실 특화	실속형	아트월 타일 시공	900,000	90,000	90,000	720,000	
		프리미엄형	히든 도어+보드 판넬	5,050,000	505,000	505,000	4,040,000	
	프리미엄 광폭 강마루	세대 바닥 전체 시공		1,100,000	110,000	110,000	880,000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납부 계좌 구분 금용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KB국민은행 393301-04-113645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부피에프금융지사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납부는 상기 계좌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금 입금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서 작성이 완료되어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 101동 8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0101-0801’으로 기재)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납부기일 및 납부 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납부 : 동·호수를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관련 유의사항 -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세대에 한해서만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공동주택 컨셉 및 주택형태, 크기, 현시점의 공급가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사전 수량확보 계획하는 모델로서, 입주 시점의 시장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가 적의 판단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라며, 자재(모델)의 가격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또는 타 자재(모델)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 시 냉매 배관 및 배수관이 천장 속에 설치되어 시스템에어컨에 연결되므로, 별도의 배관 연결구가 시공되지 않으며,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거실/침실의 냉매 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설치되지 않으며 해당 공사비용은 차감하여 산정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추후 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최종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의 계약조건(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의 납부금액 또는 납부 일정, 계약체결 일정 등)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옵션계약도 자동으로 해제 또는 취소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시 실외기가 설치되는 구간에 노출 배관이 설치되어 미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 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장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공간협소 및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 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등기구 위치 등 세대 내 조건 고려하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택된 제품의 형태, 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은 스탠드, 침실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냉매 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되는 매립 냉매배관(거실, 침실)은 설치하지 않습니다. ex) 시스템에어컨 2대(거실, 침실1) 선택 시 침실2,3에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제공되는 무선리모컨은 실내가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 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는 비교, 확인할 수 있도록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사진 등을 전시할 예정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마감 공사라서 소요 자재를 선 발주하여 미리 확보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 이후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시 원상복구, 변경공사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하는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은 본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 공급계약 양도/양수 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계약 대금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소비자 상대업종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탈로그에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본 아파트의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 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마감자재(유리, 시트, 타일, 도기류, 수전류, 조명기구 등)는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생산/공급의 중단,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1) 공통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입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 옵션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 시에 해당 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본 선택품목입니다.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문	각 목문틀(사춤 포함), 목문 상부 마감판, 마감 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미닫이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방화문 틀 및 문짝, PL 창호
바닥	마루, 타일, 걸레받이, 현관 바닥재, 현관 마루귀틀, 현관 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 몰탈 포함)	바닥난방+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 부위만 해당)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 마감(아트월, 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 공사, 발코니 벽 도장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돌림(몰딩 포함)	천장을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 천장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약세서리류, 천장재(천장을 포함), 샤워부스, 욕실 디퓨저, 욕실 바닥 및 벽타일(타일 시공을 위한 미장 포함), 욕실 등기구	시멘트 벽돌, 벽 및 바닥 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 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렌지후드	소방 관련 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 배기덕트

일반 가구	신발장, 드레스룸 및 장, 파우더장, 반침 가구(불박이장, 시스템장), 수납 선반, 욕실장, 팬트리	없음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 등기구(매입 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 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 등기구(욕실 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13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충분양가격에 마이너스 옵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됩니다.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약식표기)	46	47	59A	59B	59C
기본 선택 (마이너스 옵션금액)	24,728,000	25,006,000	28,795,000	28,617,000	28,651,000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 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비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추가 선택품목 옵션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단위세대(기본형)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단위세대(기본형)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옵션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산정지침 제3조 규정에 따라 입주 지정 개시일부터 60일 이내까지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 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반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에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관련 유의사항

- 선순위 청약 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 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2순위 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인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 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할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 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 관련 유의사항

- 건본주택의 연출용 시공 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사업주체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조합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 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 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은 일정 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및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연출용 전시품(인테리어 소품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 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 안전기준에 의해 시공됩니다(본 공사 시 상기 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 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홍보용 제작물은 광고·홍보물이므로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공급안내문, 분양계약서를 살펴보고 현장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 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홍보물[단지 조경 및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CG)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공급계약 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 형태, 창호 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 로고 사인, 외벽 마감, 식재, 바닥 포장, 단지 내 조경,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의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평면도, 조감도, 배치도, 이미지 컷,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조감도 및 배치도, 인근의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지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각종 법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도로 및 조경공간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주변 개발 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각 시행 주체가 계획, 추진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시행 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에 제작된 사전 홍보자료는 소비자 또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 계획을 확인하시고 계약하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외부 여건

- 아파트 및 기타 건축물의 외관,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 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나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구조물은 본 공사 시 형태변경 또는 구조물 지지를 위한 수직부재 등이 추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근린생활시설 및 지하/지상 주차장 환기용 그릴, 제연 DA 그릴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조경석 및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조경석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에 표현된 옹벽 및 난간 등은 구조 및 안전상의 이유로 변경(재질, 높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모형 및 CG 상에 표현된 주변 지역의 레벨 및 공원, 조경 계획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계약 전 반드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 펜스는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 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 사인물, 영구 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서비스/무인 택배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단지 외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혐오 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 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공용시설

- 본 아파트 각 단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 용도 및 디자인은 공사 진행 중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 휴게시설은 모든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용 공간임을 확인합니다.
- 공용부분의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지상 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 위치 등)은 법적인 사항을 준수하는 선에서 사업계획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부대복리시설(피트니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승,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요구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은 설치공간만 제공되며, 부대복리시설 내의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마감재 포함)는 동등 수준의 타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내 입주민을 위한 A/S 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변경될 예정입니다.
-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배수는 단지 내 레벨 차로 인해 배수 펌핑 후 메인 배수관에 연결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 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지상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피트니스 등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운영 방법 및 유지관리비용 부담은 추후 입주 시 관리 주체의 운영지침(규약)에 따라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에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 특성상 일부 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단지 바닥 마감, 조경, 창호 형태, 입면 장식 물품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원칙으로 계획, 시공합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지상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지상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에는 어린이 놀이터, 수경시설, 부대복리시설, 및 외부 휴게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입점업체(식당 등)과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 옥상층의 옥상 조경 및 부속시설(실외기 등) 설치로 인하여, 주변 일부 저층부 세대는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시설물은 동선/성능개선 및 인허가 의견 등의 사유로 실 시공 시 위치 변경,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동선 변경,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모양) 변경, 실내구획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관계 법령(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계획되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을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 홍보용 CG 등에 표현된 부대복리시설의 실 내부구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추후 입주자의 운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관련 법규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크기, 위치, 사양, 단차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실 명칭은 추후 실제 용도의 성격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환경권의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실외기실 및 외부에 설치되는 실외기에 의해 주변에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에 인접하여 펌프실, 전기실, 지하/지상 주차장 등의 급/배기용 DA가 지상에 노출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미관저해 및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놀이터, 옥외 수경시설(부대복리시설) 인근 세대 및 상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침해 및 소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들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면을 통해서 계약 전 위치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 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 상수위 제어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차량 통행 구간 유효 높이는 지하 1층 2.7m, 지하 2층 2.3m 이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295대이며, 지하 1층 127대, 지하 2층 168대로 계획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대수는 지하 1층에 12대 계획되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은 지하 1층에 급속 4대, 완속 12대, 과금형 콘센트 5개가 설치됩니다.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 배치도, 면적 및 도면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 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기능상의 향상을 위해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 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샷시는 이중 창호 등으로 설치되어 향후 입찰 결과에 따라 창호 사양 (제조사, 브랜드 및 창틀, 하드웨어, 유리, 분할 폭 등) 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설치) 시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냉매 매립배관 및 관련 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2대) 선택(설치) 시 각방에 기본 제공되는 냉매 매립배관과 관련 시설물(콘센트)은 전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기본 에어컨이 아닌 추가 설치 에어컨은 실외기 설치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 가대를 설치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며, 세대별 보일러를 설치한 개별난방 방식이 적용됩니다.
- 주방 상부장이 가스배관 등 타 시설물과 간섭되는 일부 평형은 상부장의 깊이 축소 및 문짝이 완전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설비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혹은 보조 주방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되며, 가스 배관 및 계량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가스배관은 설치 위치에 따라 노출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온수분배기는 주방 싱크 하부장에 설치되며, 싱크 하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후드 상부장에는 주방 자동 소화장치가 가스, 전기 검용으로 설치됨에 따라, 후드 상부장 일부 공간을 사용할 수 없으며 상부장 내경 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계약 시 제공되는 빨래건조대는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 문 개폐 간섭으로 빨래봉이 고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쿠팡(인덕션) 옵션 선택 시에도 주방 가스공급용 배관이 설치되며, 상부장 하부에 가스 차단기 설치 후 캡 마감 처리가 됩니다.
- 양변기는 관련 법에 의거 절수형 양변기를 적용하여 일반 양변기에 비해 배출 성능이 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및 욕실에 설치되는 수전류, 위생 금구, 배수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천장 환기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발코니, 실외기, 공용/부부욕실 설치공간의 경우 비 난방공간으로 시공됩니다.
- 각 실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기구류(콘센트, 조명기구)의 사양 및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기본형(비확장) 선택 시 일부 실의 사용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 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문 열림 방향,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노출되어있는 우수관 및 배수관의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형 시공 시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발코니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이중 사시, 단열재의 추가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였고, 확장비용은 분양가에 미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의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 실외기 설치공간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창호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혹한기에는 최소한의 난방 가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가구(주방가구, 욕실 가구, 신발장, 침실 불박이장) 설치 부위의 비도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부부욕실 및 공용욕실에는 외부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은 본 공고상의 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비확장형 선택 시 기본 옵션 및 추가 선택품목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기 바랍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실 시공 시 세대 내 욕실의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하부장)의 하부에는 부식 등의 하자 방지를 위하여 마루(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신발장 등 가구 뒷벽과 하부에는 벽지 및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 가구 및 일반 가구 도어에 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휨 방지 부속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가구 배면에 추가 부속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목문, PVC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 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장 생산 자재(예 : 목재, 인조대리석, 타일 등)는 자재의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따르며,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부 조적 벽체(침실, 욕실, PD 등의 부분)는 공사 중 비내력 콘크리트 벽체 또는 경량벽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타일의 경우 고유한 물성에 의하여 휨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 중문(추가 선택품목)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및 단열을 위한 기능성 도어가 아니며, 타입별 평면에 따라 개폐 방식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에 적용된 가구 하드웨어는 본 공사 시 동등 이상의 제품(제조사, 사양, 규격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마감재는 견본주택과 폭과 색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분전반, 통신 단자함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경우 본 공사 시 높이 및 두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난간의 위치 및 길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의 가전기기 제어 서비스는 입주자가 별도 구매한 가전기기 중 KT IoT플랫폼을 통한 연동 가능한 가전기기에 한하며, 연동하기 위한 세대 내부 무선 WiFi용 무선 AP 및 연동 가전, AI 스피커(KT 제품에 한함) 등은 입주자가 구입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입주 시기 정책에 따라 IoT 제휴사는 변경될 수 있음).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의 경우 이통사/포털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의 정책에 따라 3년간 무상서비스 제공 후 사용요금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는 성능개선이나 입주 시의 기술개발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의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AI 기능에 대한 안내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일부 서비스의 변경 또는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1~2층에는 적외선감지기가, 최상층의 경우 발코니 및 거실 등에 동체 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의 월패드, 배선기구, 스위치, 조명기구,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 등의 위치 및 제조사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침실 문 뒷벽 내부에 세대 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은 발코니 확장 여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의 사양, 설치 위치, 설치 방향 및 수량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명기구는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위치 및 색온도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침실, 욕실 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욕실 뒷선반, 주방 상판 등에 사용된 석재는 자재의 특성상 이음매가 노출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홍보물(카탈로그, 팸플릿)

- 분양홍보물(카탈로그, 팸플릿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분양 홍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향후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업부지 및 주변 환경, 개발 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 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 추진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본 공고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는 교육청이나 인허가청의 요청 시 분양계약 관련 사항(일부 개인정보 포함)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본 모집공고의 제반 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2025년 02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원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1% 이내 면적 변동 및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 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황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당사에 즉시 서면(주민등록등본 포함)으로 통보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통보 누락으로 인한 당첨자의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일절 책임지지 않습니다.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은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 인접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 시점에 따라 분양조건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외국인 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며,
 -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각 시설의 명칭, 외부 상세계획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색채심의,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등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의 사업으로 개설되는 도로 및 개발 계획 등은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 및 개발 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노출되는 웅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당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위탁자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에 의거 사업주체는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시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동법 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하고, 단지별 시설 차이로 인한 일반관리비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타사 또는 당사 분양 아파트의 마감 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계약자의 경우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명칭 및 단지 내 명칭, 동 번호는 입주 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사용검사 전·후 최종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계약자는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 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같은 타입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
- 입주예정자 참여형 감리보고제 시행에 따라 분기별 감리 보고 시 입주예정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 사용검사 시 지구단위계획인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 준공이 완료되지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와 협의하여 입주 전까지 공급될 예정이며, 필요 시 가스공급을 위한 단지정압기가 조정공간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의류 관리기, A/C 실외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유상유통 품목은 입주자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품목이며, 제조사 및 모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태양광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속도는 지하층을 포함한 총 층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 : 102동 지하 1층 제연헬름 중 1개소 내 설치
- 단지 배치의 특성상 전파방해, 난시청 등으로 인하여 TV 및 라디오, DMB 방송 일부 채널 수신에 불량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배정과 관련하여 초등학교는 '부천원일초등학교', 중학교는 오정역곡중학군(덕산중학교, 수주중학교 등), 고등학교는 부천시 관내 고등학교에 배정 예정입니다. 단, 학생 배치계획은 향후 인근 개발사업 현황, 교육 정책(학급당 인원, 통학구역 및 학군 조정 등)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및 등기, 면적 정산

- 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 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변경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지연, 세대수 조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내 위치하여 공공주택지구 준공일자와 아파트 준공일자가 다를 수 있어 아파트 준공과 토지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부천원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개발지연 등으로 인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준공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커뮤니티 시설

- 분양 시 홍보물,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 집기는 실제 시공 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 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개소), 주민공동시설(1개소), 경로당(1개소), 어린이놀이터(1개소), 경비실, 주차장 등

■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 계획변경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구조설계(지정, 흙막이, 구조부재, 구조시스템 등)는 실시설계 시 상세검토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품개선을 위한 옥상조형물, 입면 돌출벽 등이 추가, 변경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 가려질 수 있고 하부 및 인접 세대의 별도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및 동선 개선을 위한 동 출입구의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상세검토를 통해 규모, 형태, 디자인 및 동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대 창호 주변 진입로가 형성되거나 시설물로

- 인한 일조, 조망 등 일부가 가려질 수 있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동주택 및 지하/지상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음, 일조 및 민원사항**

- 일부 저층부 세대는 주변 대지와 레벨 차이에 따른 옹벽 및 조경으로 인해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 위치에 따라 저층 세대 일부에서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소음 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수경시설(부대복리시설), D/A(설비 환기구), 생활폐기물 보관소, 관리동, 선큰, 주차 램프, 외부계단,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층간 완충재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제품을 사용하며, 층간소음,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주변 도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보관소가 각 동 필로티 및 외부에 배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소음, 분진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소(입주민용 및 상가용)는 단지 내 반영될 예정이며, 인근 세대는 폐기물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폐기물로 인한 냄새, 분진, 해충 등에 의해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주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 공용 엘리베이터 주변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계약 카탈로그, 모형 등을 통해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지상 주차장 출입구 및 지상 주차장과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지하/지상 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이 위치하여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어 계약 전 위치 등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동 주변으로 생활폐기물 보관소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동 조합에 따른 동 평면상의 굴곡에 따라 인접 세대에 의해 일조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사전에 견본주택 모형 및 도면을 통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대시설, 주차장 출입구, 문주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정면 상부 및 측벽에 조명형 BI가 설치되며 인접 세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옥탑 상부에 경관 조명이 계획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헬륨 급/배기구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에 실외기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인근 세대에 소음 및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각 동 주변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저층 세대의 조망권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 인접 도로 또는 단지 내/외 도로와 단지 내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저층 세대에는 차량 소음,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키즈스테이션이 설치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에 게시되어 있는 모형, 단지 조감도 등을 사전에 확인 후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업지 주변 환경은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로 인해 인근 저층부는 냄새 및 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배치상 인접 세대 위치 및 창호 설치에 따라 동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공급용 지중 개폐기 설치로 인하여 미관이 저해될 수 있습니다.

■ **공용 홀**

- 엘리베이터 홀은 각 세대 간에 공유하는 공유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창호의 설치 유무 및 창호 크기, 또는 창 위치는 부분적으로 채광이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 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에 분양 카탈로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창호의 규격, 설치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등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법적 기준 내) 이로 인해 분양사업자 또는 시공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제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 공사·타일 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7년 05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을 통보할 예정이며, 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로 입주지정기간을 45일 이상 제공할 예정입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피트니스,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양, 성능, 설치 위치, 설치개수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 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 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 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 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 또는 최저 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 (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 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 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 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 원종 휴먼빌 클라츠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01212025-101-0000900	96,452,93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 사업주체 · 시공사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 사업주체 · 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 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 사업주체 · 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 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 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정보통신감리
회사명	(주)해승종합건축사사무소		(주)세종씨엠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939,552,900	77,000,000	53,130,000	45,870,000
사업자등록번호	220-81-31256	117-81-19918		

※ 상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시행사	시공사
상 호	일신건영 주식회사	일신건영 주식회사
주 소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72
법인등록번호	110111-0655477	110111-0655477

■ 현장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현 장	견본주택	서울보다 서울이 더 가까운 원 중 휴먼빌 클라츠 1661-7747

- 현장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중동 101-2 일원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38 (부천영상문화단지 내)
- 견본주택 운영 시간 : 10:00 ~ 18:00
- 분양 문의 : 1661-7747
- 홈페이지 : <http://www.원중휴먼빌클라츠.com>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 사항에 대하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고,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랍니다.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